

## 안전한 나라, 행복한 나라

- 정부에서는,  
지하공간통합지도를 제작하고  
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합니다.
- 지하시설을 관리기관에서는,  
구석구석 지반침하위험도를 평가하고  
첨단장비로 지하안전점검을 합니다.
- 땅을 파려는 사업자는,  
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고  
주변의 지하수를 관리해야 합니다.
- 한국지하안전협회에서는,  
지하안전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 
정책연구와 제도개선에 참여합니다.



www.kaus.or.kr



## 땅꺼짐 사고, 이제 막을 수 있습니다



콜  
센터



국토교통부

Tel : 044-201-3576 Fax : 044-201-5553



(사)한국지하안전협회  
Korea Association of Underground Safety

Tel : 02-2144-5644 Fax : 02-2144-5649



국토교통부



(사)한국지하안전협회  
Korea Association of Underground Safety

## 추진배경 및 목적

### 도심지에 잇달은 지반침하 발생!

발생원인

지반 굴착공사

노후 상·하수관

-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

## 추진경위



## 지하안전특별법 주요제도

구분	지하안전영향평가	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	시공 지하안전영향평가	지하안전점검
대상	타설, 20m 이상 타파기 공사	10m 이상 타파기 공사	타설, 20m 이상 타파기 공사	지하시설을 및 주변지반
시기	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	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	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시기	해년 정기적으로 실시
실시자	지하개발사업자	지하개발사업자	지하개발사업자	지하시설물관리자
평가자	전문기관	전문기관	전문기관	지하시설물관리자
평가항목	지형 및 지질, 지하수 변화 등	지형 및 지질, 지하수 변화 등	공사의 특성성, 지반 안전성 등	지표침하, 공동유무
협의 또는 제출기관	국토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	국토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	국토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	시장·군수·구청장
평가결과 활용	사업계획의 보정	사업계획의 보정	지하안전확보 및 재평가	지반침하위험성 점검

## 지하안전영향평가 업무절차

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28조(검토·협의절차)

평가서의 검토와 협의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.

1. 평가서 접수 및 기본요건 등 검토
2. 검토기관의 검토의뢰
3. 현지조사 및 자문회의(필요시)
4. 검토의견 종합·분석
5. 평가서의 검토의견 또는 협의내용 결정·통보

